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이 문서는 '장애인차별 금지법' 관련
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
"사본 PDF" 문서입니다.

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	일 시	2017.2.8.(수) 14:00
	장 소	본부관 312호
참석위원	정승렬(위원장), 이호선, 김인준, 이태준, 전수빈, 김민주, 김태호 (이상 7명)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	
불참위원	없음	
의 제	2017학년도 본 예산(안) 심사·의결	

◎ 회의내용

1. 개회선언

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, 2017학년도 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제 5차 회의에서는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을 심사하였으며,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언급한 생활비 장학금 신설 관련 논의를 지속한 후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.
- 아울러 2017학년도 잉여금 발생 시 처리 원칙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.

2.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 심사·의결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결과, 생활비 장학금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음.
- 생활비 장학금 지급 기준, 방법 등은 학생대표와 논의하여야 하며,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장학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1학기 집행을 위해서는 생활비 장학금에 대한 (안)을 빨리 마련해야 하며, 1학기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피 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7년 6월 중으로라도 지급되기를 바람.
- 아울러 학교 재정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생활비 장학금 1억원은 타 대학 사례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한 금액이며, 적어도 한 학기에 7천5백만원 수준으로 연간 1억 5천만원은 확보되어야 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정확한 생활비 장학금액은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학생 수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생활비 장학금 총액을 최소 1억 5천만원으로 정해놓고 통학 거리에 따른 교통비, 주거비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1억 5천만원을 생활비 장학금 총액 규모로 정해놓고 구체적인 지급 조건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장학금 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제안함.
- 아울러 교내장학금 중 성적장학금 일부를 생활비 장학금액으로 변환할 수 있으므로 그 규모도 감안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성적장학금을 축소하여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환하는 것은 반대하며, 장학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적장학금을 축소할 이유는 없음.
- 생활비 장학금은 기존 교내장학금에 추가로 신설되어야 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전체 장학금 규모 증가는 국가장학금 지원액 증가에 따른 것이며, 교내장학금의 경우 최대한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늘고 있으나 크게 증액하기는 어려운 현실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는 생활비 장학금을 협상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,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므로 학교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람.

- 아울러 생활비 장학금 신설에 대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제안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에 희망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생활비 장학금 총액을 최소 1억5천만원으로 설정하여도, 해당 금액을 소진하기 위해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에게 지급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이 많다고 3,4억 씩 무한정 지급할 수도 없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소득분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있으며, 생활비 장학금 규모가 1억 5천만원 정도인 타 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기에 제안한 금액이고 3,4억 씩 무한대로 집행하자는 의도는 아님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2017학년도에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하여 교내장학금 중 성적장학금의 일부를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환하고, 올해에 한하여 생활비 장학금 1억5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 지 질의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성적장학금을 축소하면서 생활비 장학금을 늘리는 대학은 1개 대학에 불과하며, 성적장학금 축소가 과연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성적장학금 중 일부는 적당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용돈 수준의 금액이 무의미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으며, 그러한 성격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음.
- 당초 학교 측에서 제안한 것은 성적장학금 일부를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, 그 금액 외에도 올해에 한해 추가적으로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도였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성적장학금 일부를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환하는 것은 반대하며, 교내장학금 내에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하고 그 금액은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 규모로 하는 것을 주장함.
- 다만, 생활비 장학금이 2017학년도에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없어질 것이 우려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성적장학금 일부를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환함으로써 생활비 장학금 제도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것임.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 심사를 위한 회의이므로 2017학년도에 국한하여 논의를 하고 내년에 대한 과제는 내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생활비 장학금 운영 결과 학생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고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속될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생활비 장학금 문제는 학교 측과 학생 측 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속적인 고민을 해주시기 바람.

■ 위원장

- 신설하게 되는 생활비 장학금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는 장학 제도가 되어야 하며, 구체적인 규모는 잠시 휴회한 후 결정하기로 함.

===== 잠시 휴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함 =====

■ 위원장

- 생활비 장학금 신설 관련 학생 측의 의견을 정리해 주시기 바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첫째, 2017년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비 장학금을 교내장학금 내에 신설하기로 한다.
- 둘째, 생활비 장학금 신설에 관한 논의(규모, 지급기준, 실행방법)는 학생 대표들과 논의하여 결정하고 1학기부터 집행한다.
- 셋째, 2017년은 최소 1억원 최대 1억 5천만원을 생활비 장학금 신설에 책정되는 것으로 한다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생활비 장학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 수가 얼마냐에 따라 지급 총액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‘최소 1억원’을 설정하게 되면 그 금액을 소진하기 위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.
- 생활비 장학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제안으로 신설하는 의미있는 제도이며, 학생과 학교 측에서 같이 지급 기준과 지급액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므로 최대 지

금 총액 1억 5천만원만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생활비 장학금의 최소 지급금액 설정은 학교에 대한 신뢰 확인을 위한 것이고, 최대 지급금액은 학생에 대한 신뢰 확인을 위한 것임.
- 생활비 장학금 최소 지급 총액 1억원은 적절한 제도 운영을 위한 금액으로 인식해주시기를 당부드림.

■ 위원장

- 어떤 기금을 조성할 때 그 금액의 규모를 어떻게 표현하는 지 외부 전문가 위원에게 질의함.

■ 외부 전문가 위원

- 보통 특정 금액 ‘범위 내에서’ 조성하며, 생활비 장학금 규모와 관련하여 신뢰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 5차 회의록에도 생활비 장학금 신설규모가 1억원으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학교 측의 신뢰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제 5차 회의에서 생활비 장학금 규모를 1억원으로 논의한 바 있으므로 그 금액은 이미 공론화 된 것으로 봐도 되는 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그렇다고 무조건 그 금액을 집행하자는 의미는 아니며,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생활비 장학금(안)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무조건 1억원을 집행하자는 뜻은 아니며, 학생 측에서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자는 것과 최대 1억5천만원 규모로 책정하는 것 두 가지의 신뢰를 학교 측에 제시하였음.

■ 위원장
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지 질의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전기미사용이월자금 중 명시이월금 내역에 대해 추가로 사전질의 하였는데 그 답변 내역이 명시이월금 총액보다 큰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

■ 간 사

- 기부자의 의사번복에 기인하는 것으로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 편성 시에는 명시이월하지 않고 2016학년도에 지출한다고 하여 명시이월에 포함되지 않았으며,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 편성 후 현 시점에는 다시 명시이월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임.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명시이월로 표기된 금액은 대부분 그대로 실행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로 인해 명시이월 금액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는 2016학년도 결산으로 확정되고 2017학년도 추경 예산 편성으로 조정, 반영되는 사항임.

■ 위원장

- 2017학년도 예산(안) 심사에 이어 잉여금 발생 시 처리 원칙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.
- 잉여금 발생 시 학생경비(계정과목 4320학생경비) 항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이월금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모두 합한 것인지, 이월금 및 잉여금 발생 시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그리고 어디에 명시되는지 질의함.

■ 간 사

- 이월금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모두 합한 것이며, 잉여금은 등록금회계에서 2017학년도 본 예산 편성 전기이월금 예상액보다 전년도 결산 차기이월금이 클 경우 그 차액을 말하는 것임.
- 전기이월금은 당기 수입의 한 항목으로 구성되므로 어떤 지출 항목에 어떻게 지출되는지 명시되지 않으며 잉여금은 발생할 경우 본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지출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하며 결산서 부속명세서에 기재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잉여금만큼의 금액만 따로 떼어서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간 사

- 잉여금 처리를 학생경비로 정한다면 잉여금만큼 전체적인 학생경비 항목이 증액되어 추경에 반영되며, 학생경비 내에서 자금운용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항목에 증액될 것이므로 미리 세부적인 항목을 한정짓는 것이 오히려 지출면에서 융통성을 제약할 수도 있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2016학년도 결산 시 잉여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,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2017학년도 추경 편성 시 잉여금 금액이 수입과 지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됨.

■ 위원장

- 이상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 심사를 마치고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, 학생 측 대표위원, 외부 전문가 위원
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의결함.

■ 위원장
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 심사의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 표함.

3. 심의 및 의결 사항

-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의결함.
- 아울러, 생활비 장학금 신설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.
 - 2017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비 장학금을 교내장학금 내에 신설하기로 한다.
 - 생활비 장학금 신설에 관한 논의(규모, 지급기준, 실행방법 등)는 학생 대표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집행한다.
 - 2017학년도에는 최대 1억 5천만원을 신설되는 생활비 장학금으로 책정한다.
- 2017학년도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심의하고, 잉여금 발생 시에는 학생경비(계정과목 4320) 항목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함.

4. 폐회선언

- 이상 2017학년도 본 예산(안) 심사·의결을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7. 2. 8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